

[별첨] 한국질량분석학회 회장/감사 선출 규정

제정: 2003. 8. 28

개정: 2012. 8. 23

제 2장 회원

제5조(회원의 자격 및 종류)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로 하며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정회원: 질량분석학 관련 분야의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그 분야에 종사하거나 했던 자,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.
2. 종신회원: 정회원 중 10년간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자.
3. 학생회원: 대학 및 대학원에서 질량분석학 관련 분야의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
4. 단체회원: 학교, 도서관,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
5. 특별회원: 특별회비 또는 기부금을 내는 개인 또는 단체
6. 명예회원: 질량분석학 분야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
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1.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(단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에서 제외).
2. 회원은 제4조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3. 정회원은 총회를 통해서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정회원 중 회원자격을 총회 개최년도 포함 최근 2년 이상 유지한 자는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갖는다.

제 3장 임원

제11조(임원의 선출 방법)

1.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 또는 선거권을 가진 30인 이상의 정회원 추천으로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.
2. 회장 유고 및 궐위 시 회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회장 유고 및 궐위 시 회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다음 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하며 취임 전까지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직을 대행한다.
4. 모든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 취임한다.

제 4장 총회

제14조(총회의 구성 및 기능)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회장 및 감사의 선출
2. 정관의 제정 및 변경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사업계획 및 실적의 승인
5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 5장 이사회

제19조(이사회의 구성과 기능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1.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2.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- (1)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
 - (2)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 - (3)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- (4)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그 권한에 관한 사항
 - (5)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
 - (6) 기타 학회 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